

호주 개요표

1.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규정

- 관리기관 :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
- 관련규정

구분	규정명	비고
식품첨가물 사용기준	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– Standard 1.3.1 – Food Additives Standard 1.3.2 – vitamins and minerals	링크 1)
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	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– Standard 1.4.1 – Contaminants and natural toxicants	

2. DB 참고사항

- 호주의 경우, 호주-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홈페이지²⁾에 체계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. 한국식약처에서도 식품법 관련 문서를 번역본으로 제공되고 있다.
- 식품첨가물의 정의
 - 식품기준 1.3.1³⁾에 따라 식품첨가물은 일반적으로 자체식품으로 섭취하지 않고,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나, 1가지 이상의 기술적 역할을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을 말한다. 이때 식품에 그 부산물이 남을 수 있으며, 식품의 영양 측면을 목적으로 첨가되는 가공보조제, 비타민과 미네랄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물질이다.
- 유해물질의 정의
 - 식품기준 1.4.1 '유해물질과 천연독성물질(Contaminants and Natural Toxicants)'와 1.6.1 '미생물오염제한(Microbiological Limits for Food)'⁴⁾을 근거로 특정 식품에 해당하는 금속 및 비금속 그리고 천연독성물질의 최대허용치(Maximum Levels)를 규정하고 있다. 기본적으로 최대허용치 유무와 관계없이, 오염물질과 모든 식품에서 천연독성물질의 수준(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principle)은 가능한 최소량이어야 한다.

¹⁾<https://www.legislation.gov.au/Series/F2008B00614/Amendments>

²⁾호주-뉴질랜드 식품기준청 : <http://www.foodstandards.gov.au/code/Pages/default.aspx>

³⁾최근(2012년 7월)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개정된 식품첨가물 목록을 제공하였다. 첨가물 목록에 따른 세부 기준은 제공되지 않았으며, 이는 향후 2014년 6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.

⁴⁾최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 따르면 2012년 11월 26일 자로 개정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.